



군 산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

1. 관련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5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,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6
2. 의료기관 내 의료인, 의료기사,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3. 12. 11.(월)까지 보건소 홈페이지-열린마당-보건소공지사항-‘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 교육 안내’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인터넷강의인 경우: 교육결과보고서, 수료증 스캔 제출
 -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집합교육인 경우: 교육결과보고서(교육콘텐츠 작성), 교육사진, 참석자명부
 - 외부강사 집합교육인 경우: 교육결과보고서(교육콘텐츠 작성), 교육사진, 참석자 명부, 강사프로필

*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

- 붙임 1.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.
 2.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명단 1부.
 3~6.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 4부. 끝.

군 산 시 장

수신자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, 군산교도소장(의료과장), 관내의료기관



주무관 추복음 의약계장 김희진 보건행정과장 전결 2023. 8. 7. 서정석

협조자

시행 보건행정과-13109 (2023. 8. 7.) 접수

우 5409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58, 군산시보건소 (수송동) / www.gunsan.go.kr

전화번호 063-454-4935 팩스번호 063-463-1470 / choo4370@korea.kr / 대국민 공개